

의안번호	2204024
의 퇴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4.9.25.
추계번호	24B3780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	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4의2.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	의무규정
2	안 제62조의2(질병휴가)	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(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)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휴가(이하 “질병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. 이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기간은 질병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.(제1항)	의무규정
		사업주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질병휴가 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2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질병휴가 급여”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		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휴가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봄(제4항)	의무규정
		질병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		근로자가 질병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서류의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(제6항)	의무규정
		질병휴가의 신청방법·절차와 질병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7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2	안 제62조의2(질병휴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연간 30일 범위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,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“질병휴가”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,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(안 제62조의2제1항 및 제2항)
 - －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질병휴가급여”)을 지급할 수 있으며(안 제62조의2제3항),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음(안 제62조의2제5항)
 -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질병휴가 사용자 수 및 사용기간과 질병휴가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
 - － 첫째, 개정안에 따른 질병휴가급여의 지급 대상은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나, 질병휴가의 신청방법·절차와 질병휴가 급여의 지급요건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실제 질병휴가의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－ 둘째, 개정안에 따른 질병휴가급여의 지원단기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장래에 발생할 질병휴가 사용자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이들의 통상임금을 예측할 수 없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